

2021년도 제7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7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인원	계약기간	직 무 내 용
계		46명		
보건소 역학조사관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2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역학조사 총괄 지휘, 검증, 평가 및 교육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대응계획 수립 ○ 그 외 역학조사에 필요한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보조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9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신종, 법정감염병) - 기초조사, 동선 파악, 접촉자 조사관리, 시스템 입력 ○ 그 외 역학조사에 필요한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감염병 대응관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9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병상배정 요청 및 이송 조치 ○ 감염병 역학조사 관련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재택치료 건강관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감	10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재택치료 시스템 관리 ○ 협력의료기관 지정·관리 및 연계 ○ 응급환자 의료기관 이송관리 ○ 병상대기자 관리, 그 외 재택치료 건강관리에 필요한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재택치료 격리관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감	7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재택치료대상자 통지 및 안내, 재택격리 관리 ○ 재택치료 관련 앱 설치, 사용법 안내 및 관리 ○ 재택치료키트 및 지원물품, 처방약 전달 ○ 그 외 재택치료 격리관리에 필요한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 관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감	4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자가격리 격리·건강관리(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 격리·해제 통지 및 통보서 배부, 구호물품 지원관리 ○ 자가격리자 검사관리 및 방문 검체 ○ 그 외 자가격리 관리에 필요한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보건소 차량운전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감	3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보건소 차량 운전 (환자이송차량, 앰블런스, 방역차량 등) ○ 확진자 병상 이송(주·야간, 응급) ○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 외래진료 이송, 물품 등 배송 ○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업무 및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감	2명	채용일로부터 2022.12.31일 까지 (주35시간)	○ 감염병 발생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 방역장비 관리,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감염병 예방사업 지원 ○ 그 외 감염병 방역소독에 필요한 업무 ○ 기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지원 (보건소 업무분장 사항 포함)

※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5년 범위내에서 연장여부 결정

□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사람)
 - 임기제 다급 : 20세 이상
 - 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
- 거주지, 성별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채용자격 요건 : 다음 자격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예정 분야 (근무예정 부서)	채용자격 기준	비고
보건소 역학조사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보건소]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 보건교육 등 관련 경력 ※ 주말·야간근무 가능한 자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보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도로교통법」에 따른 2종 보통 이상 면허증과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민간/국가)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감염병 대응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민간분야 등에서 근무경력 (행정·보건·위생·지도·교육 등) ※ 주말·야간근무 가능한 자	
재택치료 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채용예정 분야 (근무예정 부서)	채용자격 기준	비고
재택치료 격리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도로교통법」에 따른 2종 보통 이상 면허증과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민간/국가)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 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민간분야 등에서 근무경력 (행정·보건·위생·지도·교육 등) ※ 주말·야간근무 가능한 자	
보건소 차량운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도로교통법」에 따른 1종 보통 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공공 또는 민간분야에서 차량 운전경력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1부)는 필수 제출서류 ※ 주말·야간근무 가능한 자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보건소]	「도로교통법」에 따른 1종 보통 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공공·민간분야에서 위생·보건·감염병방역소독 관련 근무경력 ※ 주말·야간근무 가능한 자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자격증 취득 이전 관련분야 실무경력도 인정
- ※ 김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원서접수 : 2021. 12. 21.(화) ~ 12. 23.(목) [3일간]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27.(월) [예정] (※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시험 : 2021. 12. 28.(화) [예정]
- ☐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 2021. 12. 29.(수) [예정]

※ 시험일정은 임용예정 기관 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김포시청 행정과 인사팀
- 원서접수 : 2021. 12. 21.(화) ~ 12. 23.(목)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등기)접수

【우편(등기)접수 유의사항】

- 우편(등기)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응시분야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본관2층 인사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1년 제6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시험방법

① 1차시험(서류전형)

- 시험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 심사

②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발예정인원보다 면접응시자가 같거나 적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김포시 수입증지 첨부)

▷ 임기제 다급 : 7,000원 / 임기제 마감 : 5,000원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3매 분량)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는 대학원, 대학교 졸업증명서 같이 제출
- 외국학교 졸업자는 변호사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7)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부서만 표기된 증명서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표기 필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예시: 주20시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자원봉사의 경우 인정 범위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출력한 직무분야 실무경력

자원봉사 시간 또는 직무분야 실무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직접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하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만 인정함

(1일=4시간, 1일=4시간 봉사활동은 합산 8시간이므로 근무일 1일로 산정)

8)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9)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반드시 직무분야 실무경력에 명시된 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급을 명시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인정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10) 자격요건 관련 해당 자격증 (원본)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6 기 타 사 항

☐ 보수(연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 38,95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21,182천원

※ 최초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 :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적용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채용절차 및 채용예정분야	행 정 과	031-980-2104
보건소 역학조사관	보건행정과	031-980-5006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보조		
감염병 대응관리		
재택치료 건강관리		
재택치료 격리관리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 관리		
보건소 차량운전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		